

서울특별시

1212
13-10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746 / 전송 733-9535~6

문서번호 시설30312-2

시행일자 92. 1.

(경유)

수신 각 안 참조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영	구	
부	시	장	
도시계획국장			법무담당관 협조종재관 도시계획과장
시설계획과장			
기안	시설계획1계장		협조

제목 도시계획시설(유용업무설비)변경결정 및 고시

(제1안) : 내부결재

1. 도시30312-36751호(91.12.30)와 관련입니다.
2. 건설부 고시 제855호(91.12.30)로 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된

월계동 42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(유용업무설비)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.

3. 본건은 제50회 시의회(91.9.14)의 의견청취(동의)를 득하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(91.10.10)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. 끝.

(제2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발신 : 시 장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제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제재 의뢰 합니다.

가. 제재 구분 : 고시.

나. 제재 제목 : 도시계획시설(유용업무설비)변경결정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

라. 제재 내용 : 별첨.

자료붙임 : 고시문 2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발신 : 시 장

참조 : 도시계획과장

도시계획국장
1992. 1. 22
1992. 1. 22
결재
1992. 1. 20
신원준
관보제재의뢰

제목 : 같 음.

1. 도시30312-36751호(91.12.30)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
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합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문 및 관계도면 1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노원구청장

발신 : 시 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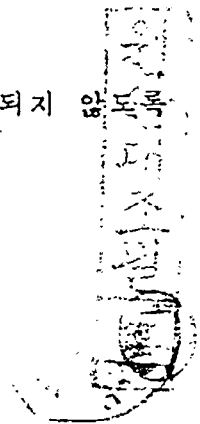
제목 : 같 음.

1. 귀 구 월계동 424번지 일대가 건설부 고시 제855호(91.12.30)로 도시계획
(용도지역)변경결정 되었으며,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
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부서에 알리고 등 지적승인 및 고시 절차를 조속 이행
하기 바람.

2. 사업시행시에는 소음공해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
공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것.

따로붙임 : 1) 고시문 및 도면 1부.

2) 건설부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

(제3안)

수신 : 칠도청장

발신 : 시 장

제목 : 같 음.

1. 경영30313-755호(91.5.6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 성북구 월계동 424번지 일대가 건설부 고시 제855호(91.12.30)로
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되고,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에 대하여는 별첨과
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였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
3. 아울러 사업시행시 소음공해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저해받지 않도록
공해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1) 고시문 및 도면 1부.

2) 건설부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(제6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발신 : 과 장

제목 : 갑 음.

1. 우리시 성북구 월계동 42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을
별첨과 갑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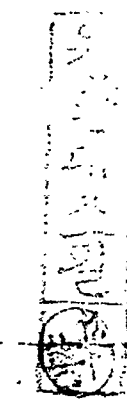
2. 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은 건설부 고시 제855호(91.12.30)로
변경결정 및 고시되었기 알려드립니다.

따로붙임 : 1) 고시문 및 도면 1부.

2) 건설부 고시문 사본 1부. 끝

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도시개발과장, 건축지도과장, 농축과장, 상공과장.

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	1992. 1. 14	제 14 호
담당자	도시계획국	사무담당관
18	홍	현

고 시

1992

서울특별시 고시 제-22호

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변경결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을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, 노원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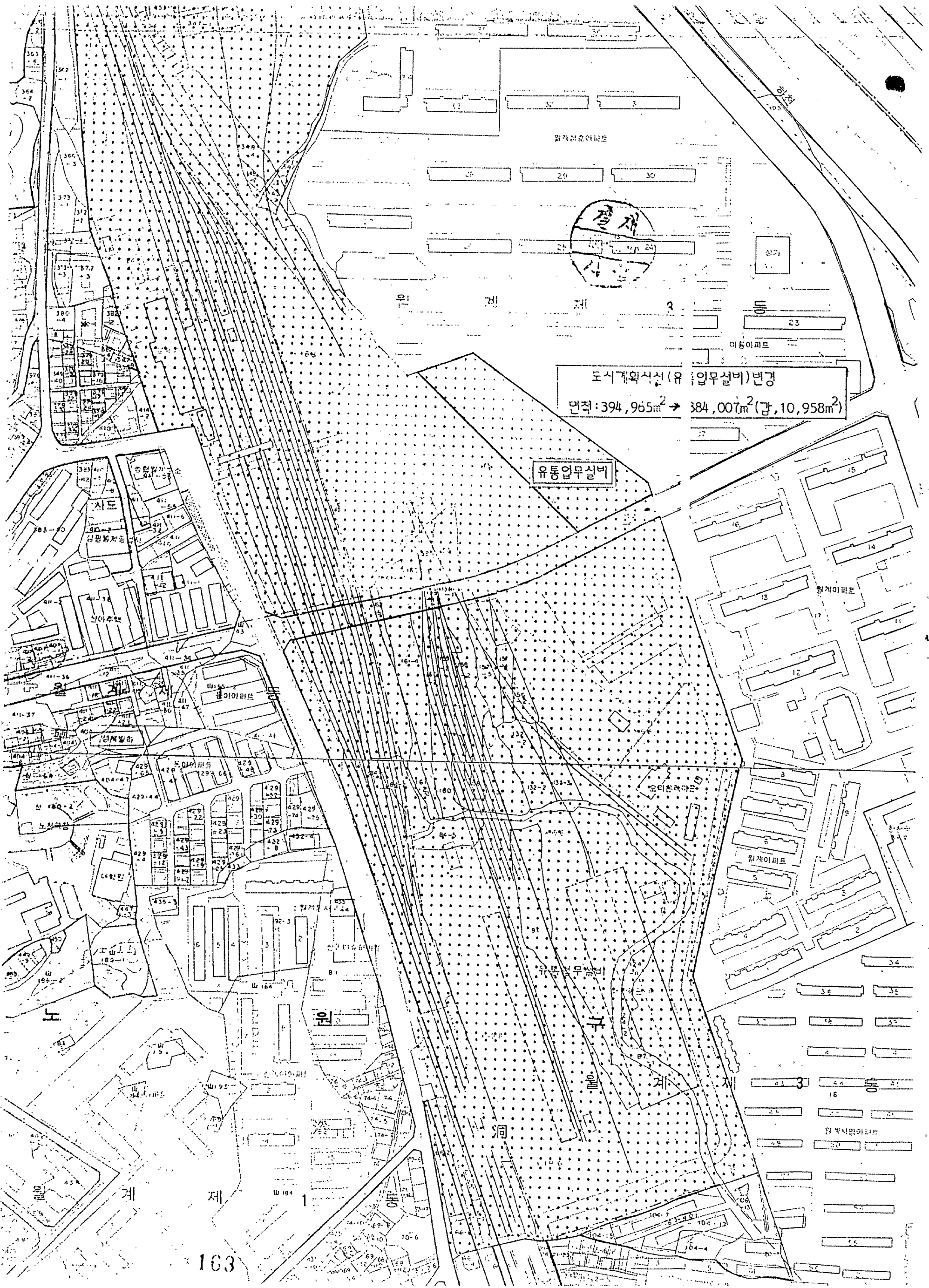
1992. 1. 22 .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변경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(㎡)	비고
기정	유통업무설비	노원구 월계동 424일대	394,965	(감)
변경	유통업무설비	노원구 월계동 424일대	384,007	10,958㎡

나. 관계도서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노원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 같음. 끝.



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 변경
 면적: 394,965m² → 384,007m² (감, 10,958m²)

유통업무설비

유통업무설비